

사형과 권력 그리고 선의지

202312019 최수경

목차

1.서론

2.본론

2.(1)첫번째 논증

2.(2)두번째 논증

3.결론

서론

현재에 대한민국은 국가 창설 이래 계속 사형을 시행하는 국가이다. 이런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와 존속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사형제도의 존속을 바라는 사람들의 의견으로는 매년 범죄자들에게 사용되는 세금은 천문학적이며 이를 사형을 통해서 줄이게 된다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죽음이라는 형벌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강한 억제력을 지니기에 사형제도는 필요로

하다고 주장한다. 교도소라는 단어는 矯(바로잡을 교) 導(인도할 도) 所(바 소)

로써 한국에서 들어온 교정주의에서 비롯된 단어로써 벌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대상을 교화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장소라는 뜻이다. 이처럼 한국의 범죄자를 수용하는

교도소는 교정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는 교도소라는 단어의 뜻으로도 알수있다. 이로인해 법적인 절차를 통한 처벌은 죄에 대한 응당한 벌으로써도 작용하지만 교화의 기능으로써도 존재함을 인지해야만 한다. 사형제도로 범죄율은 줄어드는가 사형제도는 죽음이라는 강력한 억제력을 지니므로 사형제도 존속론자들은 이를 강하게 추진한다.이를 변증적 추론을 통하여 결론을 내본다면 죽음은 강한 억제력으로써 작용할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대다수의 국가들에 비하여 범죄율이 적으며 사형을 시행한다면 재범율은 떨어지지만 그로인하여 사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며 사형으로 인한 범죄율 방지는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개인이 가진 개인적 가치,신념,도덕적 열망에 대한 반영이 되지 못한 제도라고 표현할수있다. 이를 설명하는 예시으로써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이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정치적이나 금전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이 범죄를 막기위한 수단은 사형이라는 제도만으로는 부족할것이다. 다수는 선이라는 개념을 스스로 생성해내기에 이는 개인이 지니는 선의지적 성질 무시하게 된다. 그렇기에 사형이라는 제도로 인하여 범죄율 감소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볼수있으며 재범율을 감소시키기엔 좋을수있지만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폭력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본론

첫째:국가가 주도하는 폭력,구조주의 철학은 각 사회를 이루는 개념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구조를 이룬다는 개념이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사형제도는 국가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국가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시행하지만, 이는 오히려 사회의 폭력성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사형제도는 국가가 주도하는 폭력으로써, 이는 사회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방아쇠로써 작용한다.강력범죄 및 살해 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형제도가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닌, 사회의 구조적인 한계로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은 범죄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부조리를 해소 할수있는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푸코는 사형제도 및 신체형의 한계를 맞이한 국가권력은 신체형만으로는 교화를 하기엔 힘들다 느껴 정신적 교화를 위한 감옥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는 국가가 제시한 규율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내며 이는 개인을 국가의 하나의 구성원이 되어 사회를 돌아가게 만들수있도록함에 존재한다. 여기서 '규율'이라함은 학교나 군대등 위계질서가 철저한 권력이 각개인을 지배하는 체제를 지닌 단체들으로써 이는 과거로부터 계속되어온 권력이 지배하는 방법을 제시한 이정표이기도 하다. 이처럼 한개인을 보이지않도록 장악하는것이며 이와 반대된 신체형은 미시적인 권력의 장악이 아닌 가시적인

영역이기에 개인이 권력에 대한 반발감을 불러일으킬수 있기에 현대사회에서는 신체형은 불필요하며 권력의 존속에 침해되는행위이기에 이는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의 권력을 떨어트리는 행위이기에 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개인은 국가가 주도 하는 폭력에 대한 합당성을 제시하는것이기에 때문에 국가와 개인들 모두 피해를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은 사형제도를 추진하진 않을것이라 주장하는 바이다.

둘째: 사형제도는 국가적인 분위기와 범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좌우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선의지적 행동을 망각시키는 행위로 볼수있다. 칸트의 정언 명령은 선한 행동이라고 함은 절대적이고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살해및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지녀야만하는 원칙으로써 이를 다수가 정한 규정의 의하여 통제당하기에 정언명령에 따르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이성적 판단에서 벗어난다면 감성적 차원에서 사형제도는 필요로 되는가이다. 사형으로 인해 얻을수 있는 피해자 유족들의 심리적 보상은 무시할수없다. 하지만 이를 정언명령적으로 반박을 한다면 과거의 법적 처벌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엄벌으로써 작용하기에 그 벌을 합리화 하였지만 이는 정언명령의 출현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이유라 함은 인간의 내면적으로 존재하는 잔인함을 과시하고 권력의 증진과 소속체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됨에 따라 고문및 사형의 대한 목적은 기존의 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아닌 지배 조직들의 결속을 위한 수단이라고 표현된다. 이를 반증하는 예시으로써 과거에 사형을 시행할시에는 사형관에게는 사형을 구경하는 관중들을 압도하며 사형을 시도할시에 목숨을 끊는것에 실패 했을경우에는 사면당하기도 하였고 사형도중 관객에게 제지당하는일도 존재했다. 현대 사회는 원시적인 입장에서의 국가적 형벌을 바라보는것이 아닌 현대적 관점에서의 교정을 중심으로 한 형벌 체제로써 이를 위해선 사형이라는 형벌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결론:푸코의 이러한 형질은 니체주의 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모든것들을 낫설게 보라하는 이념에서 존재한다. 국가를 포함하는 조직들은 그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까지 억제력을 지니며 이는 권력이라 표현할수있으며 개인이 무언가에 소속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부조리를 느끼게 되며 이것이 사회적 체제가 지닌 부조리이다. 조직이라는 개념의 한계라고 볼수있다. 이는 매우 아나키즘 학적인 관점이라 볼수도 있지만 앞서말한 이러한 권력에 대한 부조리를 타파함에 앞서서는 개인이 권력이 제시한 억제력 대해 인지함이 중요하다.이를 위해서는 모든것들을 낫설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며 이로인하여 개인들은 권력에 지배당하는것만이 아닌 저항하며 스스로의 권력을 향상시킬수 있는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라면 권력만이 아닌

개인이 권력에 대한 저항 의식만이 아닌 선의지적인 형질을 존속한채 절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선함행동을 따라야만 한다. 그렇기에 사형제도는 이러한 국가와 권력 모두 현명한 판단을 통한 행동으로 이루어짐을 주장하는 바이다.



감시와 처벌「미셸 푸코」

순수이성 비판 1&2 「임마누엘 칸트」